

## 갱신계약 보장내용 변경시 안내사항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갱신계약 보장내용 변경시 안내사항 특별약관”은 한 가지 이상의 유효한 갱신형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 제2조(제도 및 보험료의 적용)

갱신될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약관은 갱신하기 직전 종전의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 및 표준약관의 제·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3조(갱신계약의 보장내용 변경시 계약자 안내에 관한 사항)

제2조(제도 및 보험료의 적용)의 법령 및 표준약관의 제·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약관 개정으로 갱신계약의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전까지 중요사항 변경내역(갱신보험료 변경 제외),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전 계약은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3.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갱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갱신일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해당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특별약관이 부가되는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 약관을 따릅니다